changwon city council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열린 의회

제109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1. 12. 01.)

창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창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12.01.(수)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11. 19. 김우겸 의원 등 14명

나. 회부일자 : 2021. 11. 2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9회 정례회 제4차(2021. 12. 01.)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의결 (의안번호 제859호)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우겸 의원)

가. 제안 이유

창원시의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와 공유하여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공유와 소통으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이용대상자 및 이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이용 신청 및 이용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제9조)

○ 운전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이용자의 준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공용차량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제15조)

다.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1. 11. 20. ~ 11. 24.) 결과 : 제출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경희)

□ **제정목적**

○ **본 조례안은** 공휴일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 주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유휴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3조(이용대상자)에서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을 이용 범위로 함

○ **안 제4조(공용차량 이용의 범위), 제5조(이용 신청)에서는**
공휴일 등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으로 이용대상자는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

○ **안 제6조(이용의 승인 등),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개인정보의 제공)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대상자의 정보를 확인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함을 규정함.

○ **안 제10조(운전자의 자격), 제11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제12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제13조(공용차량의 안전관리),
제14조(이용자의 준수 사항 등 위반 시 조치),
제15조(이의신청)에서는
이용자나 운전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이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이용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종합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동 수단이 필요한 저소득계층 및 다문화·한부모·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정부에서도 공공자원 개발을 통한 공유경제 구현을 위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용차량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2019.7.2.)한 바 있음.

○ 관광·문화 등 여가활동과 일상생활에서 차량의 소유가 보편적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공용차량 공유사업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간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용대상자의 범위가 적정한지 여부와 관련 법령과의 상충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75조(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1.~ 3. 생략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을 말한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하려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안 제3조제2호, 제5호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현재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을 이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용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용자 기본정보와 운전이력(교통사고 경력 등) 등을 경찰청 조회시스템에 연동이 가능한지 여부 및 신속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보험 범위를 벗어난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및 구상권 행사 등 소송 발생 우려, 유류비 등 이용자 부담비용의 관리, 창원시 공무수행 마크가 부착된 차량을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시민들의 오해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용차량 관리 부서와 취약계층 담당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용자의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료율 증가대책, 전담직원 지정, 기타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타 시·군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시행 전 준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 요지 : 기재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건의 사항, 촉구사항 등)